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3. 7. 4. (제 293 회)	

고령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총 무 과 장
제출 연월일	2013. 7. .

법무통계담당 심사필

고령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 7. .

제 출 자 : 고령군수

1. 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인상

(1) 의료취약지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간호직과의 차별성, 의무직렬과의 업무유사성을 고려하여 수당 인상

나. 중앙행정기관(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 등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단순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신설

(1) 지급대상 : 보건진료직렬공무원(별정직 포함)

(2) 지급금액 : 월25만원

나.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에 대한 근거 신설

(1) 지급대상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2) 지급금액 : 월30만원

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단순 조례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2)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나. 예산조치 : 24,000 천원 정도

다. 협의사항 : 기획감사실

라. 기 타 :

4. 자치법규 내용 : 불 임

고령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및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포함) : 월 250,000원

제3조 중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을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u><신 설></u></p> <p>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p> <p><u><신 설></u></p>	<p>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및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포함) : 월 250,000원</u></p> <p>제3조(장려수당) ----- 제7호 라목 부터 바목까지----- ----- ----- ----- ----- -----.</p> <p><u>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u></p>